
Ⅲ. 국내 비은행 금융그룹 시스템리스크

이 장에서는 국제기구의 시스템리스크 규제 논의와 미국의 SIFI 지정 및 감독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비은행 금융그룹에 대한 시스템리스크 감독을 도입하는 경우 지켜야 할 감독원칙을 살펴보고 이어서 우리나라 비은행 금융그룹의 시스템리스크를 평가해 본다. 자산 및 부채 규모에 따른 양적기준과 더불어 사업모형에 따른 질적기준에 따라 비은행 금융그룹의 시스템리스크를 검토하여 글로벌 금융그룹과 달리 우리나라 비은행 금융그룹의 사업모형에 기인한 시스템리스크는 크지 않음을 보인다. 또한 기존 금융규제 및 공정거래 규제의 내용을 살펴 본 결과 시스템리스크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감독원칙과 시스템적 중요성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나라 비은행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은 보완적 미시건전성 감독의 문제로 귀결됨을 보인다.

1. 금융그룹 감독원칙

우리나라 비은행 금융그룹에 대한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감독 원칙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금융그룹 사업의 성격, 규모, 복잡성을 고려한 비례성(proportionality)의 원칙이다. 은행지주회사 및 비은행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는 이들이 영위하는 사업모형 등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차이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각 금융권역의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G-SIFIs 지정방법은 금융권역의 사업모형을 반영하여 범주의 가중치와 세부지표의 구성에 차이를 두고 있다. 미국도 도드-프랭크법에서 비례성의 원칙에 따른 맞춤형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즉, 강

화된 규제의 적용대상 금융그룹도 자본구조, 위험도, 복잡성, 재무활동,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규제 강도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³⁰⁾ 이에 따라 현재 미국에서도 강화된 건전성 기준을 연결 기준 자산 500억 달러 이상의 은행지주회사에만 적용하며 연준 감독대상 비은행 금융그룹은 원칙적으로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둘째, 감독부담 최소화의 원칙이다. 이는 기존 감독내용과의 중복을 배제하면서 시스템리스크 사각지대를 찾아 메우는 감독을 하는 것이다. 기존 규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가 중복되는 경우, 새로운 규제가 가져오는 편익은 미미한 반면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시장참여자의 비용은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 이미 우리나라의 금융그룹은 개별 금융업법에 의한 계열회사와의 금융거래 규제와 대기업집단에 대한 경제력집중 규제 등을 통해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보다는 기존 규제에 더하여 필요 시 해당 금융그룹의 시스템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금융그룹의 감독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규제목적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미국사례에서도 기존의 규제수준을 금융그룹의 시스템적 중요성을 판별하는 주요 고려사항으로 포함시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 금융그룹의 지정 시 반영하고 있다.³¹⁾ 이는 새로운 규제를 금융그룹에 적용하기 전 기존 규제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규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도 비은행 금융그룹에 대한 시스템리스크 규제 도입 시 시장참여자의 규제부담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2. 국내 비은행 금융그룹에 대한 시스템리스크 평가

금융그룹의 부실이나 실패가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해당 금융그룹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그룹으로 지정하여 적절한

30) DFA 제165조 (a)(2)(A).

31) 제113조 (a)(2)(H).

감독을 통해 시스템리스크를 경감하고 유사 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비은행 금융그룹의 시스템적 중요성을 평가하여 해당그룹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그룹으로 지정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미국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 금융그룹(SIFI) 지정을 참고³²⁾로 하여 우리나라 비은행 금융그룹의 시스템적 중요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하여 본다.³³⁾

가. 후보 금융그룹

보험회사를 소유한 국내 주요 금융그룹 중 금융자산의 규모를 기준으로 삼성, 한화, 교보생명,³⁴⁾ 미래에셋, 동부그룹을 대상으로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한다. 미국의 경우, 연준 이사회의 감독 대상이 되는 금융그룹은 연결기준 자산이 500억 달러 이상인 경우에 한정되므로 이 기준에 준하여 일차적인 시스템리스크 감독대상 후보 금융그룹을 선정하였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 금융그룹은 양적기준을 만족하면서 감독자의 재량적 판단에 기초한 질적기준을 함께 만족하는 경우 선정되도록 한다.

나. 양적기준

우선 양적기준으로 금융부문 자산 55조 원 이상인 금융그룹이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면 양적기준을 통과한다.³⁵⁾

-
- 32)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원-달러 환율은 1100 : 1로 가정함.
 - 33) 시스템적 중요성에 대한 측정과 이를 통한 선정은 공시되지 않는 금융그룹의 재무 및 영업 데이터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한계로 본고에서는 공시된 자료에 근거하여 시스템적 중요성을 평가하는 방법론만 제시함.
 - 34) 교보생명그룹의 경우 모·자회사 그룹으로 복합금융그룹의 보완적 감독대상에서는 제외하였으나 우리나라 생명보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시스템적 중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 35) 미국 도드-프랭크법에서 제시된 금액에 원-달러 환율 1100 : 1 적용, 단 미국은 금융그룹 단위 연결기준이나 우리나라 대규모기업집단 공시는 연결기준이 아니므로 우리나라 수치는 연결기준에 비하여 부풀려진 수치로 볼 수 있음.

- (A) 총부채 22조 원 이상
- (B) 연결기준 레버리지 배율 15 이상
- (C) 12개월 미만 단기채무 대비 연결기준자산 비율 10% 이상
- (D) CDS가 파생된 회사채 총액 33조 원 이상
- (E) 파생부채 3.85조 원 이상

〈표 Ⅲ-1〉 시스템적 중요성 인식: 양적기준

(단위: 조 원, %)

구분	양적기준	교보	동부	미래에셋	삼성	한화
금융부문자산	55	86.1	41.7	52.5	313.4	109.6
금융부문 부채	22	78.6	37.0	43.7	271.9	99.3
레버리지 배율	15	10.5	7.8	4.9	6.6	9.7
단기채무/자산	10	5.6	65.3	34.5	57.0	15.4
양적기준 만족여부	-	○	×	×	○	○

주: 원-달러 환율 1 : 1100 적용.

자료: 대구모기업집단 현황공시 자료(2015. 6).

우리나라 금융그룹의 파생금융 거래는 미미하므로 (D)와 (E)를 제외하여도 무리가 없으며, 따라서 시스템적 중요성의 양적기준을 통과하는 조건은 금융자산 55조 원을 넘으면서 (A), (B) 또는 (C)를 만족하면 된다. 이러한 기준에서 교보, 삼성, 한화 등 3개 금융그룹이 양적기준을 만족한다(〈표 Ⅲ-1〉 참조).

2015년 대구모기업집단 현황 공시자료에 따르면 대상 금융그룹 중 금융부문 자산이 55조를 넘는 그룹은 교보, 삼성과 한화 그룹이다. 그리고 금융부문 자산 기준을 통과한 교보, 삼성, 한화 그룹은 모두 금융부문 부채가 기준인 22조를 크게 상회하므로 시스템적 중요성을 판단하는 양적기준을 만족한다. 그러나 동부와 미래에셋의 금융부문 자산은 각각 41.7조와 52.5조로 규모 면에서 양적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단, 동부와 미래에셋의 원화 표시 금융부문 자산은 원-달러 환율의 등락에 영향을 받으므로 지정 당시 환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감독판단/질적기준

1) 사업모형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파급 경로

금융그룹이 시스템적 중요성의 인식을 위한 양적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감독자의 재량이 요구되는 질적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적기준은 주로 금융그룹의 자산이나 부채 등 외형상 규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비은행 금융그룹 특히 보험그룹의 시스템적 중요성은 외형적 규모보다는 영위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그룹 선정 시 감독자는 각 금융그룹의 사업모형에 따른 다른 금융회사와의 상호연계성 및 금융그룹이 영위하는 주요 금융기능의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금융그룹의 부실이 금융시스템으로 파급되는 주요 경로로는 금융그룹 리스크의 다른 금융회사 등에 대한 노출, 자산의 급매각 등 유동화 과정, 금융그룹이 영위하는 주요 금융기능의 대체성 부재 등을 고려할 수 있다.³⁶⁾ 시스템리스크 관련 감독판단 및 질적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금융그룹의 사업모형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해당 금융그룹 및 감독당국 외에는 접근이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시스템리스크 파급의 주요 경로에 대한 구체적 분석보다 질적기준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초점을 맞춘다.

먼저 노출 경로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성은 금융그룹의 레버리지 정도, 미국 내 부외노출 성격 및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로 금융그룹의 채권자, 투자자, 거래상 대방 및 기타 시장참가자 등이 금융그룹이 가진 리스크에 노출되어 금융그룹이 부실화되는 경우 금융시스템에 위협이 되는지를 판단한다. 은행을 비롯한 다른 대형 금융회사와의 거래, 자본시장에서의 활동을 통한 상호연계성 등의 리스크 노출이 여기에 해당한다.

36) 미국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의 경우 SIFI 지정 판단 시 도드-프랭크법 제113조 (a)(2)에 기반하여 금융그룹의 상당한 부실이나 실패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크게 리스크 노출 정도, 자산 유동화, 주요 금융기능의 대체가능성 등 세 가지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음. 또한 금융그룹이 받고 있는 현행 감독수준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그룹 지정 시에 함께 고려함.

〈표 Ⅲ-2〉 금융자산 대비 보험자산 비중

(단위: 조 원, %)

구분	교보	삼성	한화
금융자산	86.1	313.4	109.6
보험자산	80.2	268.8	92.7
비중	93.1	85.8	84.6

자료: 대규모기업집단 현황공시 자료(2015. 6).

우리나라 비은행 금융그룹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글로벌 보험그룹 AIG의 부실을 가져온 신용부도스왑(CDS) 등 리스크가 높은 파생금융상품이나 자본시장과의 상호연계성을 높이는 유가증권 대출거래 등이 사업모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보험그룹 자산운용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파생상품의 운용은 선물, 옵션, 스왑 등에 한정되며 헷지 목적 이외의 거래는 한도가 제한되어 있다.³⁷⁾ 또한 보험회사가 주로 대역자로 참여하는 채권대차거래도 규모도 작고 중개기관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시스템리스크 측면에서 큰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³⁸⁾ 우리나라 비은행 금융그룹의 비은행비보험 자회사의 사업모형에 따른 리스크 노출은 이들 금융그룹의 보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점 등을 감안했을 때 그 중요성이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표 Ⅲ-2〉 참조).

자산유동화 경로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성은 부실화된 금융그룹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보유한 자산을 급매각하는 경우 유사한 자산가격의 폭락을 가져오는 등 시장 혼란을 초래하여 유사한 자산을 거래하는 다른 금융회사에 손실 또는 자금조달 문제를 초래하는 정도로 평가한다. 특히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부실화가 우려되는 금융그룹의 자산 투매가 다른 금융그룹의 연쇄적인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비은행 금융그룹이 유동성 위기로 인하여 자산을 급매각하는 경우는 대규모 보험계약이 일시에 해지되어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37) 보험산업 경쟁력제고를 위해 자산운용규제가 완화될 예정이지만 파생상품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지켜볼 필요가 있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5. 10. 16), “보험산업 경쟁력강화 로드맵”.

38) 임준환·유진아·이경아(2012).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계약도 국가가 운영하는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보험 계약 해지로 인한 페널티가 크기 때문에³⁹⁾ 은행과 같은 대규모 인출사태를 우려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른 경우는 자본시장을 이용한 자산운용 과정에서 오는 유동성 위기를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자산운용규제⁴⁰⁾로 인하여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공격적 자산운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그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금융기능의 대체가능성에 의한 시스템적 중요성은 해당 금융그룹의 부실 또는 실패로 인하여 이를 이용하던 다른 시장 참가자들이 유사한 금융 기능이나 서비스의 대체물을 바로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을 평가한다. 금융기능의 대체가능성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낮아진다.

예를 들어 교보, 삼성, 한화 금융그룹의 소속 생명보험회사가 영업 중인 우리나라 생명보험 시장의 경우 상위권 회사의 보장성보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며 저축성보험 점유율은 정체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보장성과 저축성보험 모두 경쟁적인 시장으로 한 회사의 부실이나 실패에도 대체가능성 측면에서 시스템리스크를 우려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표 Ⅲ-3〉 참조). 2014년 말 현재 시장점유율 1위인 삼성생명도 보장성과 저축성에서 각각 25.5%와 19.9%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많은 회사들이 존재하므로 삼성생명의 부실이 생명보험시장에서의 특정 금융기능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손해보험 시장에서도 1위사인 삼성화재의 손해보험 주요 종목인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및 일반손해 보험에서의 시장점유율을 보면 각각 22.3%, 28.0% 및 19.0%로 부실이나 실패의 경우 다른 경쟁회사에 의해 충분히 금융기능의 대체가 가능한 수준으로 보인다(〈표 Ⅲ-4〉 참조).

이들 금융그룹의 시스템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낮은 또 하나의 근거로는 현재 보험회사의 양호한 지급여력비율도 들 수 있다(〈표 Ⅲ-5〉 참조).⁴¹⁾ 만약 이들 금융그룹이

39)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 보험계약 초기에 집행된 신계약비 등 사업비를 공제하고 해지환급금을 받게 되므로 통상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음.

40) 보험업 감독규정 별표 8 및 9에서 외국환 및 파생상품 등 위험자산에 대한 보험회사의 투자를 규제하고 있음.

41) 엄밀한 의미에서 금융그룹의 시스템적 중요성은 미시적 건전성 지표에 영향을 받지 않음.

시스템적 중요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미시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이 양호하면 실제 부실이나 파산으로 이어져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표 Ⅲ-3〉 상위 3개 회사 생명보험시장 점유율

(단위: %)

구분	회사	2010	2011	2012	2013	2014
보장성	삼성	30.4	29.1	26.8	26.2	25.5
	교보	13.5	13.3	12.6	12.4	12.2
	한화	14.0	13.5	12.9	13.0	13.4
저축성	삼성	20.3	19.8	24.3	20.2	19.9
	교보	10.5	9.3	8.7	8.6	8.9
	한화	9.4	9.7	10.6	10.6	10.4

자료: 금융감독원 공시 시스템.

〈표 Ⅲ-4〉 상위 3개 회사 손해보험시장 점유율

(단위: %)

구분	회사	2010	2011	2012	2013	2014
장기	삼성	24.7	23.0	23.4	23.1	22.3
	현대	16.0	16.9	16.2	16.4	16.4
	동부	15.7	17.3	15.7	15.6	15.7
자동차	삼성	27.3	27.4	27.6	28.2	28.0
	현대	15.5	15.6	15.5	15.8	16.5
	동부	14.5	15.5	16.1	16.7	17.0
일반	삼성	20.1	20.1	19.0	20.5	19.0
	현대	12.8	12.8	12.2	12.6	12.3
	동부	9.5	10.4	10.4	11.4	11.4

자료: 금융감독원 공시 시스템.

개별 금융회사나 금융그룹 자체의 부실이나 파산 위험을 측정하는 미시건전성 지표와 달리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시스템적 중요성은 이들 금융회사나 금융그룹의 부실이나 파산 시 금융시스템이나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나 충격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시스템적 중요성을 가진 금융그룹의 경우, 이들의 부실이 금융시스템과 실물 경제까지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시스템리스크의 유발 및 전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이들의 미시건전성은 추가적이고 강화된 규제가 필요한. 시스템적 중요성을 갖는 금융그룹에 대해 추가적 안전장치로서 추가손실흡수를 위한 자본을 쌓도록 강제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음. 여기서는 데이터의 한계로 인하여 비은행 금융그룹의 시스템적 중요성을 “없다”고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지 않으므로 이들 금융그룹이 만약 시스템적 중요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양호한 지급여력비율을 보임에 따라 실제 부실이나 파산으로 인하여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낮음을 보이고자 함.

〈표 Ⅲ-5〉 상위 3개 회사 지급여력비율

(단위: %)

생명보험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지급여력비율	270.1	344.2	293.2
손해보험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지급여력비율	221.3	380.1	162.3

자료: 금융감독원 공시 시스템(2015).

정리하면, 교보, 삼성, 한화 금융그룹은 사업모형을 통한 리스크 노출, 자산유동화 및 금융기능의 대체가능성 등의 여러 경로 측면에서 시스템리스크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감독당국은 필요 시 금융그룹의 사업모형에 관한 더욱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정교한 질적 분석을 수행해야 보다 정확하게 금융그룹의 시스템적 중요성을 판단할 수 있다. 결국 양적 및 질적 기준에 근거한 감독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비은행 금융그룹의 시스템적 중요성이 결정되겠지만 적어도 사업모형 측면에서의 비은행 금융그룹의 시스템리스크는 낮아 보인다. 또한 이들 금융그룹이 시스템적 중요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양호한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하는 경우 금융시스템이나 실물경제에 충격을 주는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2)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에 대한 현행 규제

비은행 금융그룹의 시스템적 중요성을 판단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현재의 규제수준이다. 현행 규제가 금융그룹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면 새로운 시스템리스크 규제를 통해 얻는 편익은 크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개별 금융업법은 물론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를 통해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보험업법은 대주주 및 계열회사에 대한 투·융자 제한 등을 통해 금융그룹 내부의 금융거래를 통한 리스크의 전이를 통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가 대주주나 계열사와 거래할 때는 일반적인 개인이나 법인과의 금융거래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⁴²⁾

특히 보험업법 제111조의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규정은 보험회사가 대주주의 출자 지원을 위한 신용공여나 대주주와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일정 규모⁴³⁾ 이상 대주주에 대한 투·융자 시 보험회사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 찬성으로 의결을 요구한다.

보험업법 등에 의한 계열회사 및 대주주 관련 규제는 주로 금융회사의 미시적 건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시스템리스크를 직접적으로 고려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금융자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자산운용 및 신용거래 등의 규제는 한 자회사의 부실이 계열 금융회사로 전이되는 경로를 제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따라서 시스템리스크를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보험업법 등 금융업법에 의한 규제와 더불어 우리나라는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융그룹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에 의한 경제력집중억제 관점에서도 규제하고 있다. 일정 규모(자산 5조) 이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하여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만든 상호출자제한 규제는 대표적인 대기업집단 규제라 할 수 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의결권도 제한되는데, 이들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이들은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의무를 가진다.

이들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규제는 대기업집단이 내부에서 순환 출자 등을 활용하여 가공자본을 만들어 외형을 확장하고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막고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따라서 그 자체로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제어하기 위한 규제는 아니며, 이들 규제는 금융규제라기보다 해당 대기업집단의 시스템리스크 유무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포괄적인 기업집단 규제라 할 수 있다.

4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는 min(자기자본 40%, 총자산 2%), 대주주에 대한 투자는 min(자기자본 40%, 총자산 2%)지만 동일차주와의 금융거래는 총자산의 12%, 동일 법인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7%.

43) 자기자본의 0.1%와 1,000억 원 중 작은 금액.

하지만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상의 대기업집단 규제 역시 비은행 금융그룹 그리고 이들이 속한 대기업집단이 잠재적으로 가질 수 있는 시스템리스크를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마불사(too big to fail) 관행에 기댄 대형 금융그룹의 과도한 리스크 추구 등 도덕적 해이의 완화가 금융그룹에 대한 시스템리스크 규제의 주요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대기업집단에 대한 경제력집중 규제는 이들이 소속된 비은행 금융그룹의 리스크도 간접적이지만 함께 완화할 수 있다.

라. 시스템리스크 평가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나라 비은행 금융그룹의 시스템리스크를 평가하면 일부 대형 금융그룹은 자산 및 부채의 규모에 기초한 시스템적 중요성 관련 양적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양적기준을 통과한 금융그룹도 사업모형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파급경로 등에 기초한 질적기준을 고려하면 시스템적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⁴⁴⁾ 그리고 현행 금융업법과 공정거래법에 기초한 이들 금융그룹에 대한 사전적 행위규제도 이들 금융그룹의 시스템리스크를 직·간접적으로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비은행 금융그룹의 시스템리스크는 현재 상황에서 미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3. 국내 비은행 금융그룹에 대한 시스템리스크 감독

우리나라 비은행 금융그룹은 사업모형에 근거한 시스템리스크도 미미하며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업법 및 공정거래법에 의한 계열회사와의 금융거래 규제를 통해 잠재적인 시스템리스크도 완화시키고 있다.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우

44) 단, 구체적 자료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며 향후 이들 금융그룹에 대한 구체적 자료에 기초한 감독당국의 보다 정교한 평가와 판단이 필요함.

리나라 비은행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원칙으로 제시한 비례성 및 감독부담 최소화 원칙을 따르면 우리나라 비은행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에 있어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감독은 아직 그 필요성이 적으며 현 상태에서 비은행 금융그룹에 대한 시스템리스크 감독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른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⁴⁵⁾

따라서 국내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은 보완적인 미시건전성 감독에 보다 중점을 두어 검토할 필요가 커지며 본고는 4장과 5장에서 이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담는다.

45) 향후 우리나라 비은행 금융그룹의 사업모형이 보다 복잡해지고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국내 금융그룹의 시스템적 중요성이 높아지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감독방안을 〈부록 I〉 나.에서 제시하였음.